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60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남국·김용민·김종민

박범계 • 박주민 • 백혜련

소병철 · 송기헌 · 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9. 12. 3 0.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, 2020. 1. 14. 공포되었음.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,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상 검찰청 등에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(안 제13조제2항, 제24조제3항·제5항, 제4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검찰청"을 "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한다.

제24조제3항 중 "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"를 "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,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"을 "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44조제3항 후단 중 "검찰청"을 "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고지) ① (생 략)	제13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(所在)	2
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	
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	
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	
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<u>검찰</u>	검찰
<u>청</u>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	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
공고하여야 한다.	<u>처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	제24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<u>청구</u>	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<u>검사</u>
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	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
청 또는 그 지청(支廳) 소재지	지청(支廳) 소재지를 관할하는
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	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(支院)의
지원(支院)의 판사에게 하여야	판사에게 하여야 하며, 고위공
<u>한다.</u>	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
	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
	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	⑤
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	
느 ㄱ 요지를 목수부저명령을	

반은 사람(피고인은 제외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한다.

제44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걸찰성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기방
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
공직자범죄수사처
제44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검</u>
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
<u> 첫</u>